

소득 단계	대상자	보험료액
제 1 단계 ※ 1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생활보호수급자 또는 노령복지연금수급자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전년의 소득금액(※2)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3)을 공제한 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0.5 (0.3)※1
제 2 단계 ※ 1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전년의 합계소득금액(※2)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3)을 공제한 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만엔 초과·120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0.75 (0.5)※1
제 3 단계 ※ 1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제 1 단계와 제 2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0.75 (0.7)※1
제 4 단계	· 본인은 구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세대 중에 과세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으로, 전년의 합계소득금액(※2)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3)을 공제한 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0.9
제 5 단계	· 본인은 구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세대 중에 과세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으로, 제 4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
제 6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2)이 120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2
제 7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2)이 120만엔 이상 210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3
제 8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2)이 210만엔 이상 320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5
제 9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2)이 320만엔 이상인 분	기준액×1.7

※ 1 저소득자인 분에게는 개호보험법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표 가운데 ( ) 내의 부담 비율은 최대한으로 경감한 경우입니다.

※ 2 (1) 합계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공적연금공제와 급여소득공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 구시정촌민세 본인 비과세로 합계소득금액에 급여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급여소득은 급여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급여소득과 연금수입 관련 소득이 있는 분의 소득금액조정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공제 전의 금액)에서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해당 금액이 0 미만이면 0).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특례》

구시정촌민세 본인 과세로 합계소득금액에 급여소득 또는 연금수입 관련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금액과 연금수입 관련 소득의 합계액은 급여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과 연금수입에서 공적연금등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급여소득과 연금수입 관련 소득이 있는 분의 소득금액조정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공제 후의 금액)에서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해당 금액이 0 미만이면 0).

(2)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되는 장기·단기 양도소득 관련 특별공제액(아래의 (가)~(사))이 있는 경우는, 합계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 수용·교환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5,000만엔(최대)

(나) 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재해지의 방재집단지전촉진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2,000만엔(최대)

(다) 특정주택지조성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1,500만엔(최대)

(라) 농지 보유의 합리화 등을 위해 농지 등을 매각한 경우의 800만엔(최대)

(마)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3,000만엔(최대)

(바) 특정토지(2009년 및 2010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 소유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것)를 양도한 경우의 1,000만엔(최대)

(사) 저미이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100만엔(최대)

(아) 위의 (가)~(사) 중에서 2개 이상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최고한도액 5,000만엔(최대)

※ 3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해당 금액이 0 미만이면 0)